

##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3005호)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국공립학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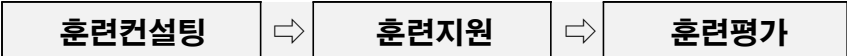
### 제14조(소방훈련과 교육)

-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위반 규정

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미실시 하였을 경우, 위반한 공공기관 직근 상급기관(감사·복무를 담당하는 부서)으로 훈련 미실시 통보

## ----- 공공기관 소방훈련 문의 -----



| 담당부서      | 전화번호      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현장대응단     | 6981-6940 | 하계1·2동, 상계6·7동, 중계본동 |
| 상계119안전센터 | 6981-6961 | 상계2·3·4·5동, 중계1·4동   |
| 공릉119안전센터 | 6981-6971 | 공릉1·2·3동             |
| 월계119안전센터 | 6981-6981 | 월계1·2·3·4동           |
| 수락119안전센터 | 6981-6991 | 상계1·8·9·10동          |

☞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관할구역을 확인하신 후 담당부서와 일정 등 협의하여 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노원소방서장